



법무법인(유한) 국 제

등부 2019년 제 2827 호

인 증 서

법무법인(유한) 국 제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205호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공중실 TEL. (051) 463-5070

FAX. (051) 506-6727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

발기인총회 의사록

2019년 12월 3일 9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명 주식총수 30,000주

출석주주수 1명 인수주식수 30,000주

발기인 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회의 임시의장으로 조한준을 지정하고, 지정
자인 조한준은 이를 수락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상법 소정의 법정 수
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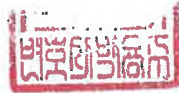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일치로 원
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 3에 따라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이하
법인이사과 감독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사(들) 라고 한다.)을 두기로
하고, 정관30조 제2항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인이사

로 선임되었으므로,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고 선임방법을 물은
즉,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법인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감독이사 오 중 호

감독이사 양 관 혁

제3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를 발기인이 아닌 이사, 감사 전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자 전원 이의 없이 감독이사전원을 검사
인으로 선임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위 감독이사 전원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조사에 착수하다.

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휴회한 후 속회하다.

검사인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4호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한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즉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승인하다.

본 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각은 10시)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19년 12월 3 일

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겸 발기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수탁대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장 이 재 광 (인)



조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본인등은 검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29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사항

1.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정확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30,000주(액면주식 1주의 금액 금 10,000원)로 그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보통주식 30,000주 2019년 12월 3일 인수완료

2. 인수주식수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30,000주에 대하여 금300,000,000원의 납입금이 2019년 12월 3일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농협은행 ^{새마을금회} _{BIFC} 지점(지부)이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에 의하여 명확함.

3. 현물출자기타조사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기타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상법 제290조 규정사항을 정관에 정한바 없으므로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정확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

4.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

2019년 12 월 3 일

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검사인 오 종 호



검사인 양 관 혁



법무법인(유한) 국제

등부 2019 년 제 2827 호

인 증

위 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_____ 의

2019 년 12 월 3 일자 발 기 인 총 회 _____

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겸 촉탁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대리인 류 성 주
는 _____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 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_____

2019 년 12 월 3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법무법인(유한) 국제

소속 부산지방검찰청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205호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류 동 주



아 래



- | | | | |
|----------|----------|----------|---------------------------|
| 1. 주민등록증 | 2. 진 술 서 | 3. 주주명부 |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5. 정 관 | 6. 확 인 서 | 7. 위 입 장 | 8. 인감증명서 |